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관리

- 22년도 변경사항 안내(공지사항) -

h·well
국민건강보험



목 차

- 01. 종사자 연차사용내역 조회화면 신설
- 02. 근무내용상세신고 입력 화면 구성 변경
- 03. 특례입소자 입소 관련 점검
- 04. 기타변경 사항



01. 종사자 연차사용내역 조회 화면 신설

h·well
국민건강보험



종사자 연차사용내역 조회 화면 신설



연도별 종사자 연차 및 반차 사용 내역 조회 가능

- 장기요양기관의 최종 결정요청 내용을 토대로한 종사자별 연차 및 반차 사용일수 조회
- 근로기준법 60조에 해당하는 연차 발생일수를 "연간 연차일수"에 직접 입력
- [연간 연차일수] - [연차 사용일수]를 [연차 현황]에 표기하여 잔여 연차일수 확인 가능
- 경로: 급여비용가산및감액산정 > 근무내용관리 > 연차사용내역

급여비용가산및감액산정 [npfa100m01]

사용자 메뉴 ?

급여제공연월: 2021년 12월 • 급여유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월기준근무시간: 184시간] • [자료상태: 입력가능] [닫기]

입퇴소내용관리 • 근무내용관리 • 기타자료관리 • 프로그램관리 • 결정요청 • 결정내용조회 • 제출대상조회

근무내용신고 • 기타근무내용신고 • 근무내용종합조회 • 근무내용제출 • 제출이력조회 • 근무유형보기 • 종사자 근무표

입근무입력 • 익일근무 • 근무 • 휴가 • 상제 • 연차사용내역 • 근무내용일괄등록 • 저장 • 종사자근무 상세 신고 • +행추가 • -행삭제

근무시작 • 근무종료 • 주간휴식(제외) • 야간휴식(제외) • 주간 • 야간 • 합계 • 근무구분1 • 근무내용 • 근무시작 • 근무종료

00시 • 00분 • 00시 • 00분 •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가족관계 • 휴가사유 • 본인 • 연차 • 가족관계 • 휴가사유 • 본인 • 유급휴일대체

종사자 근무기간

직종 • 근무형태 • 근무시작

11.요양보호사 1급 견임 2016-01-1

종사자

전체

NO • 성명 • 생년월일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종사자연차사용내역 [npfa301p05]

대상연도 2019 [엑셀] [저장] [조회]

연간 종사자 연차유급휴가 내역

• '연간 연차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입력하십시오.

• '연차 사용일수'는 기관에서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수가가산 결정요청한 근무내용 중 연차 유급휴가등록의 집계이며, 기관 참고용 자료입니다.

※ 참고용 자료의 '연차 사용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경우에만 근무시간으로 산정되며, 「근로기준법」상 초과한 연차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NO	성명	생년월일	연간 연차일수 (기관입력)(A)	연차현황 (A-B)	합계(B)	연차 사용일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5	3	2	연차(2일)											
2			10	8	2	연차(1일)	연차(1일)										
3			0	0	2	연차(1일)	연차(1일)										
4			0	0	1		연차(1일)										
5			0	0	1.5	반차(0.5일)	연차(1일)										
6			0	0	1	연차(1일)											
7			0	0	1		연차(1일)										
8			0	0	1		연차(1일)										
9			0	0	1	연차(1일)											
10			0	0	1		연차(1일)	연차(1일)									
11			0	0	2	연차(1일)	연차(1일)										
12			0	0	2.5	반차(0.5일)	연차(1일)										
13			0	0	5	연차(5일)											
14			0	0	2	연차(2일)											

• 통상적인 연차, 반차 적용 : 연차(1일) = 8시간, 반차(0.5일) = 4시간

02. 근무내용상세신고 입력 화면 구성 변경

h·well
국민건강보험



근무내용상세신고 입력 화면 구성 변경(필수확인)



■ 근무내용 입력 방법 변경

근태내역추가

근무 4시간
본인 예방접종리

근무 4시간
본인 반차

기존

근무 미입력일 좌클릭
-> 근무내용 입력

근무 입력일 좌클릭
-> 근무내용 삭제

변경

☒ 근태내역추가

1. 체크 후 일자 클릭 시
-> 해당일 휴가 및 교육 내용 추가 가능
2. 체크 해제 후 일자 클릭 시
-> 해당일 근무내역 삭제

※ 근무 + 휴가(또는 상세) 입력시 반드시 근무시간을 먼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휴가(또는 상세) 입력 후 근무시간을 나중에 추가 입력 하면 근무내용이 삭제됨

근무내용상세신고 입력 화면 구성 변경



■ 교육 등 근무내용 입력 방법 변경

– 변경사항 1

- ▶ 기존: 별도의 “근무내용상세신고”탭에서 입력
- ▶ 변경: “근무내용신고”탭의 우측상단부 영역 “종사자근무 상세 신고” 신설

– 변경사항 2

- ▶ 기존: 근무시간 입력 후 교육내용 등 입력(근무시간이 등록된 일자에만 교육 내용 등 입력 가능)
- ▶ 변경: 근무시간 입력 없이 교육시간만 입력(근무시간과 중복해서 교육 시간 입력 불가)

※ 하루 최대 8시간 범위내에서 **실제 입력한 시간만 인정**

기존

변경

근무내용상세신고 입력 화면 구성 변경



■ 유급휴일 입력 화면 변경

- 휴가사유 중 "유급휴일근무" 선택 시 근무인정시간 입력 화면 변경
 - 최소 단위 10분으로 입력 가능하며, **기존의 근무시간 입력 방법과 동일**
 - 기존 월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이월시킬 시간만 입력하는 방법이 아닌, **공휴일은 근무시간은 모두 유급휴일근무로 입력**하며 이월된 시간을 자동계산하여 구분하여 표기
- 예시) 월기준근무시간 152시간, 10/4 개천절 제외 근무시간 148시간(4시간 부족)

10/4 개천절 유급휴일근무 00:00 ~ 08:00 입력

- > 148 시간 + 유급휴일근무 4시간(00:00~04:00) + 유급휴일(이월) 4시간(04:00~08:00)
- > 월기준근무시간 152(충족) + 다음달 이후 이월된 시간 4시간

기존

The screenshot shows the '기존' (Old) interface. In the '휴가사유' (Leave Reason) dropdown, '유급휴일근무' (Paid Leave Work) is selected. The calendar view shows a grid of dates with time slots for input.

변경

The screenshot shows the '변경' (New) interface. The '유급휴일근무' (Paid Leave Work) option is highlighted in the dropdown. A red box highlights the '4 개천절 대체공휴일' (4 Chuseok Substitute Public Holiday) notice, which states: '본인 유급휴일근무 00:00~04:00 유급휴일(이월) 04:00~08:00'. The calendar view shows the updated schedule.

근무내용상세신고 입력 화면 구성 변경



■ 유급휴일 대체 입력 방법 변경

- 상단의 휴가 선택 후, 유급휴일대체란 선택 시 이월된 유급휴일 일자 조회 및 선택 가능
- 해당일자에 이월된 시간만큼 유급휴일대체 시간 입력 가능

근무내용신고

기타근무내용신고

근무내용종합조회

근무내용제출

제출이력조회

근무유형보기

종사자 근무표

일근무입력

익일근무

근무

휴가

상세

Tooltip

연차사용내역

근무내용일괄등록

저장

종사자근무 상세 신고

+행추가

-행삭제

근무시작

근무종료

주간휴식(제외)

야간휴식(제외)

주간

야간

합계

00시

00분

00시

00분

0시간

00분

0시간

00분

0시간

0시간

0시간

선택

선택

선택

선택

0시간

00분

0시간

00분

0시간

0시간

0시간

가족관계

휴가사유

휴가일수

근무인정시간

본인

연차

1

8시간

가족관계

휴가사유

유급휴일일자

근무시작

근무종료

본인

유급휴일대체

선택

00시

00분

00시

00분

종사자 근무기간

선택

확인

개천절대체공휴일(10/04)04:00~08:00

• 근무시간 176시간 기준 / 0시간 / 176시간 부족

직종

근무

형태

근무시작

근무종료

11,요양보호사 1급

전임

2015-06-19

종사자

전체

NO

성명

생년월일

입력 여부

1

남기동

59-10-10

X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03. 특례입소자 입소 관련 점검

h·well
국민건강보험



특례입소자 입소 관련 점검



■ 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

- 정원을 충족하여 운영 중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특례입소 가능
- 특례 입소자는 해당일 입소가 이루어지는 수급자로 입소중인자를 전환하여 적용 불가

입퇴소유형 변경시 특례를 선택할 경우 기존의 입소자는 팝업 안내 후 변경 불가

- 정원을 충족하지 않은 기관에서 특례입소자가 존재 할 경우 가감산 결정시 최종결론 "미결정"
- 결정내용 조회화면에서 "요약보기" 또는 "상세보기 "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할 경우 미결정 사유 팝업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참고

급여배출가산및감액산정 [npfa100m01]

사용자 메뉴 ?

급여제공년월: 2019년 01월 급여유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가형1실, 가형2실 [자료상태: 입력가능] [인기]

입퇴소내용관리

근무내용관리

기타자료관리

프로그램관리

결정요청

결정내용조회

제출내장조회

결정내용 조회

대상년월	결정이력번호	급여유형	결정일자	최종결론	비고	
2019-01	36 (최종)	치매전담실가형2실	2022-01-18	03.정상	요약보기	상세보기
2019-01	37	치매전담실가형1실	2022-01-18	03.정상	요약보기	상세보기
2019-01	36	노인요양시설(개정법)	2022-01-18	00.미결정	요약보기	상세보기
2019-01	35	노인요양시설(개정법)	2022-01-11	00.미결정	요약보기	상세보기
2019-01	34	치매전담실가형2실	2022-01-07	03.정상	요약보기	상세보기
2019-01	33	결정내용상세(미결정) [npfa701p05]		03.정상	요약보기	상세보기
2019-01	32	결정내용(2019년 01월)		00.미결정	요약보기	상세보기
2019-01	31	정원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특별입소자가 존재합니다.		03.정상	요약보기	상세보기
2019-01	30			03.정상	요약보기	상세보기
2019-01	29			00.미결정	요약보기	상세보기
2019-01	28			00.미결정	요약보기	상세보기
2019-01	27			03.정상	요약보기	상세보기
2019-01	26			03.정상	요약보기	상세보기
2019-01	25	노인요양시설(개정법)	2022-01-04	00.미결정	요약보기	상세보기

04. 기타변경 사항





■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의 업무수행(고시 17조)

기존

프로그램관리자가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

횟수 월 **2회** 이상



2022년 1월

기존

프로그램관리자가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

횟수 월 **1회** 이상

※ 수급자방문관리 입력 화면은 기존과 동일



■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적용 기관 확대(고시 55조)

- 조리원 1명 이상 추가 배치시 가산점수 1점 산정 기준 변경
- [기존] 입소자 50인 이상 시설 → 전체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력추가 배치시 가산점수 추가 산정

-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추가[신설]
-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

■ 입소자 50인 이상 시설 간호사 배치시 추가 점수 산정

- 간호사 배치 적용시 기관당 0.2점 추가산정
- 배치된 간호사 숫자와 상관없이 0.2점 적용



■ 인력추가배치 가산인정 범위 및 요양보호사 가산점수 변경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점수 0.1점 상향
- 추가 산정된 **0.1점은 가산 인정범위 미포함**

[기관규모별 가산점수 인정범위]

기관규모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 요양보호사수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 산정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4.0점	요양보호사 3명 이상	1.2점
입소자 30명 이상 50명 미만	6.4점	요양보호사 4명 이상	1.2점
입소자 50명 이상 70명 미만	8.8점	요양보호사 5명 이상	1.2점
입소자 70명 이상 80명 미만	10.0점	요양보호사 6명 이상	1.2점
입소자 80명 이상 90명 미만	11.2점		
입소자 90명 이상 120명 미만	13.6점	요양보호사 7명	1.2점
		요양보호사 8명 이상	2.4점
입소자 120명 이상 시설	14.8점	요양보호사 8명	1.2점
		요양보호사 9명 이상	2.4점

(예시)

입소자 10인 시설에 사회복지사 2인, 요양보호사 2인 추가배치

○ [기존] 사회복지사 2.8점(1.4점 * 2인)

+

요양보호사 2.4점(1.2점 * 2인) = 5.2점

가산점수 인정범위 : 4.0점 → 적용점수 : 4.0점

○ [변경] 사회복지사 2.8점(1.4점 * 2인)

+

요양보호사 2.4점(1.2점 * 2인) = 5.2점

... 추가 0.1점*2인 차후 적용

가산점수 인정범위 : 4.0점

→ 적용점수 : 4.0점 + 0.2점(요양보호사 2인 * 0.1점) = 총 4.2점

※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인원이 3명 미만이므로 가산점수 인정범위 추가 산정 해당 없음

감사합니다

